

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4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일

발 의 자 : 오 지 연 의원

1. 제안이유

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인의 종류에 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신설함(안 제2조)
- 나. 공인의 규격사항을 개정함(별표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체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인의 규격

공인의 구분	규격
하남시의회의 청인	3.6센티미터 정사각형
하남시의회 의장의 직인	3.0센티미터 정사각형
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	3.0센티미터 정사각형
하남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	2.4센티미터 정사각형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종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 위원회위원장</u>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